PwC 법률 뉴스레터

외국인 노동 허가 관련 신규 규정

2026년 11월



At a glance

정부는 10월 20일 시행령 393/2026/ND-CP호를 발행하여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했습니다. 2026년 12월 5일부로 393호 시행령이 발효되어 지난해 발행된 시행령 219호를시행령을 대체합니다. 시행령 219호에 관한 이전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십시오.

주요 변경 사항

- **외국인 인재 활용 확대**

  시행령 393호는 노동허가증 발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고, 외국인재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했습니다. 여기에는 세계 500대 대학 졸업생들이 포함되며, 특히 베트남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, 과학, 교육 및 연구 분야가 그 대상입니다.

- **노동허가증 면제 범위 확대**

  교육, 전략 기술, 인공지능(AI)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한 전문 인재를 더욱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증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.

- **단기 파견에 대한 규정 강화**

  90일 면제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. 이제 이 면제 기간은 고용주별이 아니라,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베트남 내 모든 업무를 합산하여 역년(1년)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또한, 고용 관계가 성립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지 채용 형태에 따른 노동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.

- **더 디지털화되고 간소화된 절차**

  시행령 393호는 정부 차원의 데이터 공유를 확대합니다. 이에 따라 당국은 노동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대신, 베트남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죄 기록, 건강검진 결과, 여권 신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(해당 데이터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경우). 또한, 여권에 대해서는 영사 인증 절차가 면제됨이 명시되었습니다.

- **보고 및 인력 관련 규정 준수**

  고용주는 외국인 인력 현황에 대해 매년 6월 5일과 12월 5일까지, 연 2회 보고해야 합니다. 또한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수시로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 본인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용되어야 하며, 다른 고용주에게 재파견(전대)할 수 없습니다.



Contact us

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
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Richard Irwin
Partner
r.j.irwin@pwc.com



우정균 – 호치민 사무실
Director, Korean CPA
+84 (28) 3823 0796 Ext. 4611
jungkyun.woo@pwc.com



Phan Thi Thuy Duong
Partner
phan.thi.thuy.duong@pwc.com



위규영 – 하노이 사무실
Manager
+84 (24) 3946 2246 Ext. 1011
wee.kyue.young@pwc.com

www.pwc.com/vn

©2026 PwC Legal (Vietnam) Co., Ltd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